

“가습기살균제 무죄, 과학방법론 무지”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등, 1심서 모두 무죄

“재판부, 과학적 연구 결과 해석에 서툴러”

증인 섰던 전문가 “재판부 종합 판단 안해”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학계 전문가들이 “법원이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적 연구가 어떤 방법으로 증명되는지와 연구결과 해석 평가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잘 모른다”며 “재판부는 과학적 연구 결과 해석에 서투를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인해 피해 사례와 이에 기반한 연구 중요성과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한계가 있는 동물실험에 지나친 비중을 두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명하고 단정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했다.

백 교수는 “재판을 통한 법적 논증 내지는 다름과 연구를 통한 학술적 검토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독성의 확인, 독성물질의 표적장기 도달의 확인, 그리고 도달한 양이 충분한 정도인지의 확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종합적 확인은 전형적인 위해도 평가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위해도 평가는 실제 그 독성물질의 영향이 충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기 이전에는 평가에 사용하는 모델과 가정의 특성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학술적으로는 위해도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방식이 인과관계 판단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며 “역학조사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에 대해 일부 새롭게 제기되는 개념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증과 종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능검사상 확산능이 저하된 것, 폐손상 사례가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 양-반응 관계를 검토하면, 양이 아니라 농도가 용량-반응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 등을 통해 CMIT/MIT라는 독성물질이 폐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일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증인으로 섰던 이규홍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의 입장문도 소개됐다.

이 박사는 “저는 이 재판에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고 판결문 많은 부분에서 저의 증언이 인용됐다”며 “하지만 제 증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됐다는 것을 느꼈다. 또 단정적으로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겐 증언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문에는 여러 부분에서 특정 시험들을 언급하면서 ‘CMIT/MIT가 폐 내 염증 및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며 “그러면서 제가 ‘CMIT/MIT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심문은 해당 연구결과로 한정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시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고, CMIT와 MIT에 대한 독성 실험에서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짚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 한계점이었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유해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억 원 가로챈 수급책 구속영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 수억여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40대 수급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저금리 전환 대출 미기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도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여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급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함께 술 마신 친구 여친 강제추행 30대 공무원 징역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시 56분께 광주 모 가게 앞에서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이후 B씨에게 ‘차에 타서 같이 가자’며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집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A씨가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으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묘지에서 불, 성묘하던 모녀 2~3도 화상

전남 여수의 묘소에서 불이 나 성묘 중이던 어머니와 딸이 크게 다쳤다.

18일 오후 2시34분 여수시 마항동의 묘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묘 인근에 있던 어머니 A(74)씨와 딸 B(50)씨가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가족 묘소를 방문했다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박 의심되지만...경찰, 5인 이상 금지 위반으로 단속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 있던 9명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30분께 서구의 빌딩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경찰관들은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된 원탁 등을 치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50대 A씨 등 9명이 현장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 관찰 구경과 혐의해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군수에게 폭행 당해”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A(59)씨는 이날 권 군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부안군청 3층 복도에서 토지 용도 변경 관련 민원 처리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군수실을 찾았다가 권 군수에게 욕설을 듣고 목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하자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민원

은 이미 처리했다”면서 “평소 관련 문제로 A씨가 민원실과 군청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고, 사건 당일 군수실이 (군수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옷을 잡은 것일 뿐인데 되려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